E - 75 - 2011

디스플레이 레이저 설비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

201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o 작성자 :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재희 교수
- o 제·개정 경과
 - 2011년 11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o 관련규격 및 자료
 - KS C 6702 레이저 제품의 방사 안전 기준
 - KS C IEC 60825-1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제1부: 장비 등급분류, 요구사항 및 사용자 지침
 - KOSHA GUIDE E-69-2011 (디스플레이 레이저 방사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)
- o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제1절(전기기계 · 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)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1년 12월 26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디스플레이 레이저 설비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디스플레이 레이저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안전성 평가에 대한 요구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디스플레이 설비가 정상상태 또는 고장상태에 발생할 수 있는 가시상황에 대해 적용하여야 하며, 특히 가시광선(400~700 nm)과 부차적인 방사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제조자"라 함은 레이저 제품 및 이것에 부수되는 안전 장치 및 대책의 설계· 제조·수리·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(나) "사용자"라 함은 레이저 제품을 운전(조작) 또는 감시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다.
- (다) "최대 허용 노광량(Maximum Permissible Exposure, 이하 MPE라 한다.)"이라 함은 정상 상태에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정도로 노출되는 레이저 방사 레벨을 말한다. MPE 레벨은 눈이나 피부가 즉시 또는 긴 시간 후에 상해 없이 노출될 수 있는 최대 레벨을 나타내며 방사 파장, 펄스 지속시간, 400

E - 75 - 2011

 $\sim 1400 \text{ nm}$ 범위에서의 가시 및 근접 적외선 방사에 의한 망막 상의 크기에 관계가 있다.

- (라) "정반사(Specular reflection)"라 함은 거울로부터의 반사와 같이 방사의 입사 광선과 반사 광선 사이각의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표면반사를 말한다.
- (마) "확산반사(Diffuse reflection)"라 함은 표면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광 선의 공간적인 분포 변화를 일이키는 반사를 말한다.
- (바) "레이저 시스템(Laser system)"이라 함은 추가 구성요소에 상관없이 적절한 레이저 에너지원과 결합된 레이저를 말한다.
- (사) "미러볼(Mirror-ball)"이라 함은 분당 수 회전으로 구동될 수 있는 구형태를 띄고 있으며, 구상에 작은 거울들이 배열되어 있는 외부 광학 부품의 한 형태를 말한다.
- (아) "레이저 방사(Laser radiation)"라 함은 제어된 유도방출에 의해 레이저 제품에 서 방출되는 180 nm~1 mm 파장 범위를 갖는 전자파 방사선을 말한다.
- (자) "주사 레이저 방사(Scanning laser radiation)"라 함은 고정 기준 프레임에 대하여 전파의 시변 방향, 원점 및 형태를 갖는 레이저 방사를 말한다.
- (차) "방사전력(Radiant power)"이라 함은 방사 형태로 방출, 전달 및 수신되는 전력을 말하며, 단위는 W이다.
- (2)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 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레이저 설비의 위험요소

E - 75 - 2011

- (1) 국내 레이저 제품에 대한 노출 기준은 KS C IEC 60825-1(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제1부: 장비 등급분류, 요구사항 및 사용자 지침)에 따라 1등급 및 1M등급, 2증급 및 2M등급, 3R등급, 3B등급, 4등급으로 구분되며, 눈에 대한 노출 기준은 4등급 기준에 따른다.
- (2) 눈 손상은 출력밀도뿐만 아니라 노출 지속시간과 가시조건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.
- (3) 눈이 직접적으로 정반사에 노출되면 모든 형태의 가시상황에서 눈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.
- (4) 출력밀도가 낮은 디스플레이 레이저 설비라 할지라도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정적 인 광선인 경우에는 수백 미터까지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.

5. 반사광

- (1) 정반사는 거울과 같이 매끈하고 빛나는 표면에서 발생하며, 1차 레이저 광선과 같은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.
- (2) 확산반사는 석조와 같은 거친 표면, 연기 및 먼지, 오염된 공기 상태에서 발생하며, 이 경우에 눈은 본래의 출력값보다 낮은 출력값이 망막에 노출되므로 확산반사는 정반사에 비해 위험하지 않다.

6. 방사 주사

- (1) 서로 직각으로 진동하는 검류계를 탑재한 한 쌍의 거울에 의해 발생하며, 주사 장비는 대부분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된다.
- (2) 광선 이동으로 노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사된 방사는 고정된 상태에서 방

E - 75 - 2011

출되는 광선보다 눈 손상의 위험성이 적다.

- (3) 방사범위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었거나, 특히 고장 난 상태에서 주사 패턴이 바뀐 다면 눈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.
- (4) 연속파 방사는 방사지역 전체가 고주파로 주사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가 정해서는 안 된다.
- (5) 주사 빈도는 상해 임계값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.

7. 설치장소

- (1) 레이저 방사 시 광선에 직접 노출되거나 거울과 같은 주변 광학부품에 의해 노출 이 되는 등 예상 밖의 반사면에 의해 노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의하여야 한 다.
- (2) 옥내에 디스플레이 설비가 설치된 경우, 장식거울, 타일 또는 조명 장치로부터 발생하는 레이저 반사에 의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.
- (3) 옥외에 디스플레이 설비가 설치된 경우, 레이저 방사가 적용 가능한 MPE 수치 이하인 경우라 할지라도 레이저 방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.
 - (가) 예상외의 레이저 방사는 자동차 운전자와 비행사의 눈을 부시게 하여 방향 감 각을 잃게 할 수도 있다.
 - (나) 도로와 철도에서는 항공교통제어와 운행, 교통신호에 대한 간섭 등의 위험성 이 존재한다.
 - (다) 레이저 설비는 방사가 수평위치 아래의 각도로 투사되고, 조작자가 통제하는

E - 75 - 2011

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한다.

8. 안전성 평가

- (1) 안전성 평가 목적은 디스플레이 동안 생길 수 있는 방출이 정상운전 및 고장상황 모두에서 적용 가능한 MPE 수치 이상의 노출을 피하는 것으로 MPE 수치를 중 요시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.
 - (가) 규모가 큰 고가의 디스플레이 레이저 설비에 대한 노출 위험요소를 찾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.
 - (나) 설비를 기준으로 레이저 방출 기준은 장소에 따라 제한적이거나, 설치자 또는 사용자에 의해 MPE 수치가 크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.
- (2) 보조 가시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,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경이 최대 50 mm인 광학 장치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MPE 수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(3) 안전성 평가는 정상운전 및 고장운전 시 적정 MPE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 - (가)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는 안전보건상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.
 - (나) MPE가 접근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방사에 대하여 개인 노출 최대 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.
 - (다) 바라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사, 즉 잠재적으로 위험한 모든 방사는 설비의 조작자에 의한 경고문과 경계 울타리를 하는 등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.
 - (라) 고장상황에서 MPE 수치를 초과하는 노출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, 다음의 설비 에 대해서는 고장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.

E - 75 - 2011

- ① 광선 주사장치
- ② 전원장치
- ③ 프로그램 제어기
- ④ 단일 구성부품
- (마) 방사된 레이저의 가시장소에 출입하는 외부인, 관람객에 대한 잠재적 위험상 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.
- (바)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보조 가시 장치의 효과는 MPE 수치에 반영되어야 하다.
- (사) 렌즈의 직경이 7 mm를 초과한 경우, 방사광선에 대한 평가는 광선 범위 내에서 위치에 따른 강도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.
- (아) 특정 방출에 대한 위험도는 설비의 제조자에 의해 보증되어야 하며, 전체 각 도를 고려하여 위험도를 계산하여야 한다.

9. 주사된 방사

- (1) 사람에게 주사되는 방사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모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요구 조건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.
 - (가) 레이저를 방사하기 위한 디스플레이의 정상운전 동안에는 KS C IEC 60825-1 에서 설명하는 눈 노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(나) 디스플레이 내에 있는 검류계에 탑재된 거울이 기계적 또는 전기적 오류가 발생하면 고장운전으로 인해 눈 노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① 눈 노출이 발생하면 0.25 초 이내에 노출이 차단되어야 한다.
 - ② 만약 0.25 초 내에 풀린다면 이와 같은 노출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.
 - ③ 설비의 고장으로 인해 MPE의 수치가 초과방출이 발생할 수 있다면 사람에게

E - 75 - 2011

직접적인 주사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.

- (2) 사람을 주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설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야 한다.
 - (가) 시스템 내에 다른 부품의 연속적인 동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중 주사 부품
 - (나) 작동상의 결함이 일어날 때, 위험한 방출을 일으키지 않는 제어 시스템
 - (다)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시스템을 자동으로 정지하는 주사 실패 검출 장치. 이때, 정지 속도는 수 mm초 이내

10. 동시 노출

- (1) 디스플레이 레이저 설비의 안전성 평가는 분리된 광원을 동시에 볼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(2) 가시 지점에 대하여 각각 적용할 수 있는 MPE 수치는 KS C 6702(레이저 제품 의 방사 안전 기준)에서 명시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11. 그 밖의 중요사항

- (1) 1 mW 방사전력을 초과하는 정적레이저 광선을 보거나 계산 또는 측정에 의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주사된 광선을 직접 본다면 눈 손상의 위험이 있다.
- (2)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위험한 레이저 광선의 접근성

E - 75 - 2011

- (나) 접근 가능한 레이저 광선의 출력 밀도
- (다) 레이저 광선 투사(주사 또는 정적)의 형태
- (라) 눈 깜빡임에 대한 반사운동 및 레이저 광선의 맹목적 응시가 없다는 가정이 합리적인지 여부
- (3)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디스플레이 레이저 설비는 사용되기 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.
 - (가) 레이저 광선을 의도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여부, 우연하게 보일수도 있는지에 대한 여부 또는 설비 오동작을 초래하는지 여부
 - (나) 의도적으로 보는 레이저 광선(주사 방출)의 안전에 대한 평가
 - (다) 잠재적으로 위험한 광선에 사람 접근의 제한
 - (라) 설비의 오작동이 발생할 경우의 가시안전과 노출 위험성의 중요성
- (4) 디스필레이 레이저 시설은 시설 보정 또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.
- (5) 사용자와 설치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며,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.
- (6) 안전성 평가시 교육, 감독, 작업 안전시스템과 보안경의 공급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.